

공 시 송 달 공 고

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장기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28일

서울지방우정청장

- 제목: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
- 법적근거: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제37조,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
- 공고대상자 및 내역

당사자	소재지	점유면적 (㎡)
(주)한국**물류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 동대문우체국 지하 2층	건물 35.94 (전용 30.00)

- 공고기간: 2025.04.28.~2025.05.12.

※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

5. 청문실시

- 가. 청문일시 및 장소: 2025.05.23.(금) 10:00 ~ 11:00 / 서울지방우정청 중회의실(9층)
- 나. 참석자: 청문주재 변호사, 서울지방우정청 국유재산 담당, 공고당사자((주)한국**물류)
- 다. 청문사유: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및 사용허가서 제21조 위반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전 사용자 의견 청취

5. 청문시 유의사항

- 가.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(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)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나. 「행정절차법」 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,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는 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(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신청한 대리인 선임이 허가되면 귀하에게 통보해드립니다.
- 다.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라.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6. 의견 제출기한: 2025년 05월 22일까지 또는 청문당일 제출 가능

7.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

- 가. 청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(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)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8. 기타문의 안내: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

(서울시 종로구 종로 6, 9층, 전화 02)6967-9213, 팩스 0505-005-1101)